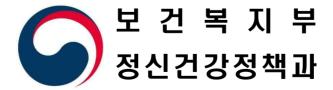
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 및 선정계획(2차)

2022. 1.



1 추진배경

-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·분류·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필요
- 특히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,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응이 곤란하여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
- * 극단선택 시도 정신질환자, 응급입원 거부된 후 끝내 투신('20.11.9), 응급입원에 대한 경찰 판단유보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('21.5.5)
- **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으로**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**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**기관으로 기능

<**관련 정책 발표 :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(21~25, '21.1.14.)>** 핵심과제 2-2. 지역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

- ③ (치료) 정신 응급환자 적시 치료 인프라 구축
 - 정신 응급상황 상시 대응을 위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('21~)
 - * '25년까지 총 14개소 지정 목표
 - **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** 운영과 함께 **정신 응급병상 상시 확보** 추진('21~)

2 | 법적 근거

○ 응급의료법 개정(응급의료법 제30조의5 신설)을 통해 **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** 근거 마련("20.2.28. 시행)

<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5>

제30조의5(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 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3 사업 주요 내용

□ 사업내용

-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·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 운영 등
-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관찰병상 체류(최대 3일)를 통해 추가적 내·외과 진료·처치 시행
- 내·외과 진료 및 처치 종료 후 정신과적 입원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귀가 또는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

[참고]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

(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)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.

-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해 구축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(네트워크)* 참여
 - * 정신건강복지센터, 소방, 경찰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정신응급 대응 및 지역별 응급입원 가능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이송 가능 정보 등 공유

□ (사업기간) 사업수행기관 선정일로부터 ~ '22. 12월

- * 1차 공모 대상기관 사업기간 : '22.1월 ~ '22.12월
- ※ 매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평가 진행(시설 및 최소 인력기준 준수, 결과 보고를 통한 사업수행 평가 등) 후 사업기간 연장 가능
- 1차 선정기관의 경우 '22.3월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개소·운영 준비
- * 추가 선정기관은 조속히 개소·운영 준비 필요(선정 후 2개월 이내)

4 시업수행기관 선정 계획

① 선정 개요

- (신청 대상) 정신응급대응 협의체*가 운영되고 있는 시·도 내 ^①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^②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아래의 권역정신응급의료 센터 시설·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
 - * (정신응급대응 협의체) 정신 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별 경찰, 소방, 정신건강복지센터,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·운영 중('21년 17개 시도 운영 중)

- <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시설·인력 기준 >

1. 시설 기준

-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일반환자 이용 공간과 분리·구획된 "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(관찰병상 2병상 이상)"을 확보
- 응급실 내부(혹은 응급의료센터 내 독립된 구역)에 정신응급환자 전용 관찰 병상을 2개 이상 갖추어야 하며,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.
- 응급실 내 타 진료구역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고,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관찰병상은 1인실로 하여야 함.
- 관찰병상은 **자·타해 위험을 동반**한 **정신응급환자 전용 사용이 원칙**으로, 해당 환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**정신응급상황 대비**를 위해 **상시 비워둠**

<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설치 예시>



2. 최소 인력 기준

- (응급의학과 의사 2명)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·외과적 처치가 가능하여야 함
- **(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)** 정신응급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
-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작성 필수
 - * (예시) 전문의 또는 전공의(내부 기존인력 활용 등) 24시간 당직근무 or 전문의 24시간 대기(on-call) 당직 계획 or 야간 전담 전문의 채용 후 배치 등
- (간호사 2명)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·관찰 및 이송 대비 등
 - *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관찰병상 간호사 인력은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능
- **(보안인력 2명)** 의료진 등의 **안전확보** 등
- (행정인력) 응급입원 등이 필요한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연계·이송 지원 (필수 서류 준비 등), 지역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운영 등 업무지원
- 전담인력 1명 이상 필수 근무
- ※ 신규채용 포함, 기존 인력(전문의, 간호사 등) 활용 가능하며, 24시간 대응 할 수 있는 인력 체계 구축 필요
- ※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인력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4에서 입원환자 수에 따라 두는 인력에 포함될 수 있음
- ※ 본 사업은 응급실 기반의 국고지원 사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(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·인력 기준과는 일치하지 않으며, 추후 관련 시행규칙은 개정 예정임
- (선정기관 수) 8개소 선정 ('25년까지 14개소 지정 목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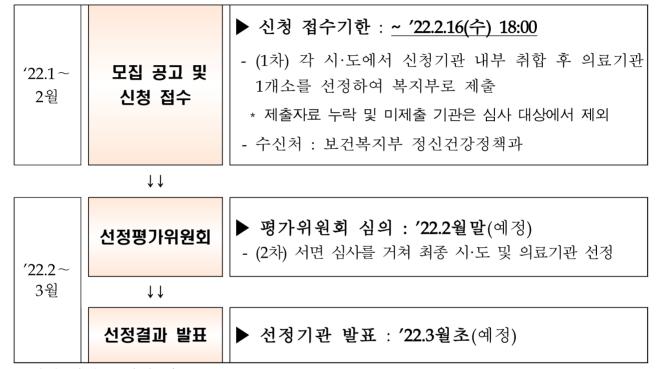
- (선정절차) 각 시·도에서 신청기관 내부 취합 후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1개소를 복지부에 제출,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 평가위원회*의 심사를 거쳐 최종 시·도 및 의료기관 선정
 - * (평가위원회) 보건복지부, 경찰청, 소방청, 대한응급의학회,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, 지역·재직 기관 등 관련성 최소화
 - 신청 의료기관 및 담당 지자체는 평가세부내용[붙임1]을 참고하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

항목	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	배점
인프라 구축 계획	○ 시설 구축 계획의 적절성(15점) ○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 채용·운영 계획의 적절성(25점)	40점
사업 수행 계획	 ○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, 성과지표의 타당성(10점) ○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의 구체성(10점) ○ 권역 내 유관기관(정신의료기관 등)과의 협력체계 구축계획 등(10점) ○ 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계획의 적절성(5점) ○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진에 대한 병원장의 의지(5점) 	40점
정신응급협의체 운영계획	○ 지자체의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구축 및 운영, 지원체계 (15점) ○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진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(5점)	20점
기타고려사항	 ○ 현재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가점(+3점) ○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운영 시 가점(+3점) ○ 최근 3년간 건보허위·부당 청구, 리베이트 처분,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감점(최대 -4점) 	가점 감점

- *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
- (신청 절차)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을 신청하는 병원은 각 시·도를 통해 신청서 서식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복지부로 제출

- (제출 방법)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관할 시도에서 보건복지부(정신건강정책과)로 전자문서 형태(첨부파일은 PDF 형식)의 공문 제출 (신청 접수는 시도의 공문 발송 시점 기준)
 - *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
 - ** 제출기한 내에는 제출자료에 대한 수정 제출이 가능하며, 기한 이후 제출 불가 및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(선정 일정)



* 선정 일정은 변경 가능

2 의무와 지원 내용

- (의무)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전담병상 운영 및 지역기반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 - 지정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이송되어 온 정신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
 - 지정기관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
 - * 별도 협의체 운영 시 참여,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(현장점검 포함),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
- (재정지원)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인건비 및 단기관찰구역 리모델링비 등 개소당 573백만원(12개월) 지원
 - * 추가 선정기관의 경우,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차등지급 적용
 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
 - *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등 관련 내용은 지정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
 - < 기관당 예산지원(국비 50%, **지방비 50%**) 주요 내용 > **※ 지방비 확보 필요**
- ① (인건비 426백만원) 전문의(2명) 288백만원, 간호사(2명) 80백만원, 보안인력(2명) 58백만원
 - *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, 그에 따라 인건비 사용에 대한 세부 조정 내용을 운영계획서 세부예산 항목에 작성하도록 함
- ② (운영비 등 112백만원) 필수병상 사용료 등 운영비 112백만원
- ③ 단기관찰구역(2병상) 리모델링 35백만원
- (수가 지원)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단기관찰구역에서 처치·관찰 등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('22.3월 시행 예정)
 -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,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신설
 -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, 원격협의진찰료-자문료 산정 시 가산 신설
 - * 관련 수가 고시 및 급여기준 2월 중 발령 예정

붙임 1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 평가 세부내역(안)

○ **(운영계획서 서면평가)** 운영계획의 적절성 조사표

기본항목		세부내용	비고				
		<인프라 구축 계획>					
		○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등 추진 일정이 적절 한가?					
		○ 24시간 정신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사·간호사 등 인력 운영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?	25점				
	권역	<사업 수행 계획>					
	정신 응급 의료	○ 사업 추진 필요성·목적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, 제시한 성과지표가 타당한가?	10점				
운영	센터 (80점)	○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및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인가?	10점				
계획에 대한		○ 권역 내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?	10점				
평가		○ 사업 예산 집행 계획과 연간 사업 추진 계획이 적절한가?	5점				
		○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병원장의 의지가 있는가? * 센터 인력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, 추가 예산 투입 여부, 보조금 지원 종료 후 사업 지속 추진 등에 대한 기대효과와 활용전략	5점				
		<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계획>					
	지자체	○ 전년도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운영 현황 및 2022년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적정한가?	10점				
	(20점)	○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-지역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 및 이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는가?	5점				
		○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는가?	5점				
		○ 현재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기관에 가점(+3점)	법 참여				
_	타 사항	○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운영 시 가점(+3점)					
,		○ 최근 3년간 건보허위·부당 청구, 리베이트 처분,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감점(최대 -4점)					

^{*} 평가 세부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붙임 2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·운영

① 추진 배경

- **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 위해** 지자체별 정신보건, 경찰, 소방 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지역 내 현안 논의 필요
-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소방, 경찰의 협력 강화
-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신고, 현장대응, 이송 등 각 단계별 안전 보장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정신보건, 경찰, 소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체 유영을 통해 모니터링

② 협의체 구성

- (시도) 아래 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**필수인력으로 반드시 참석**하며, 시도 정신보건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
 - (정신보건) 시·도 정신보건 담당부서장(주재) 및 정신의료기관 담당,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, 응급진료 협력병원 관계자
 - (경찰) 지방 경찰청 담당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
 - (소방) 지방 소방청 담당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
 - (기타 전문가) 정신 응급 상황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
- (시군구) 아래 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**필수인력으로 반드시 참석**하며, 보건소 정신보건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
 - (정신보건) 보건소장(주재) 및 정신의료기관 담당, 기초 정신건강복지 센터장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, 응급진료 협력병원 관계자
 - (경찰) 지방 경찰서 담당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
 - (소방) 지방 소방서 담당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
 - (기타 전문가) 정신 응급 상황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

[3] **역할**

○ **(주요역할)** 지역사회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**대응체계** 구축 및 정책 방향 공유

○ (협의 안건)

- 관할 지역의 정신응급 대응 현황 점검,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
-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를 위한 지정 협력병원 현황 점검
- 관할 지역의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현황 점검
- 현장대응 매뉴얼(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2.0) 지역 내 적용 사례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
- 필요시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현안 발생 시 대응 방안 논의

4 운영방안

- **분기 1회 이상** 협의회 개최하여 관할 지역의 정신응급 대응 현황 점검
-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
- 지역사회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에 작성

[별지 제1호 서식]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· 운영 사업수행기관 신청서

	명 칭				개설허가일		
	개설허가번호		허가병상수				
의료기관	전문과목						
	소재지				전화번호		
대표자	성명		생년월일		의사면허번호		
업무	성 명						
입구 담당자	연락처	(전화) (휴대전화)		(이메일	일)		

본 의료기관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사업을 신청하고, 운영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, 기관장)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<규비서류> 첨부서류 1. 운영계획서 제출 공문(신청 의료기관) 1부 2.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 1부	
---	--

[별지 제2호 서식]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

사 업 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·운영								
사업수행기	기관명							
		성 명			직급	7/직위		
사업 책	임자	소속		전화			FAX	
		부 서			E-MAII			
사업 협력	기관	00정신	의료기관, (00 % (<u> 기건강</u> 복	지센터 등	=	
예 상	····	계 (,	보조금	7]	 타 예산			
사 업 비		(^ 천원	지방비 포함 천유	<u></u>	 처우	출참여 기 총참여		명
11 A1 -1 -1						인원수		Ö
사업기간		~	2022. 12.	31.				
년도「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」운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기관장 직인(인) *반드시 병원장 날인(사업책임자: 병원장)								
보건복지	부장관	/ 시.도ズ	시사 귀하					
병원 *필수입력사항 담당자 직책 / 성명 : (연락처(Office Tel: , Fax:) (M.P: , E-mail:)) 사업수행기관 주소: *담당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(병원 대표번호가 아닌, 담당자 직통번호) 등 반드시 명기 지자체 *필수입력사항 담당부서명 및 담당자 직급 / 성명 : (연락처(Office Tel: , Fax:) (M.P: , E-mail:) (M.P: , E-mail:)								
	(M	.P:		, E-1	nail:)

<u>요 약 문</u>

사 업 명	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·운영								
사업책임자			사	사업수행기관					
사 업 비	총	· 계		보조금			기	타	
^F 웹 비		천원	<u> </u>		천원				천원
사업기간	20 .		-	((가	H월)			
사 업 내 용 요 약									
1. 인프라 구축 계획(시설·인력)									
종별 구분	□ 상급종	□ 상급종합병원 □ 종합병원							
응급의료기관 구분	□ 중앙응	-급의료센터	러 🗌 권역	응급의료선	<u>l</u> 터		지역응급의	의료?	센터
11 7 2	병상 설	설치 장소		병상 수			병실 현	형태	
시설 구축	0 7 0 H	실 내/외	2	병상 이상			1인실/다	<i>구인겉</i>	1
	응급의	의학과	정신건건	강의학과	フレチ	,1	비신이크	과 제기자	기시크
인력 운영	전문의	전공의	전문의	전공의	간호	^ †	보안인력	 ଫୁଏ	3인덕
	2		2		2		2		
2. 사업 수행 계획	1								
3. 정신응급 대응	협의체 운	영계획							
※ 기타사항									
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여부 예□ 아니오□									
정신건강의학과 폐쇠	l병동 운영	여부				예[□(병상 수)	아니	오□
건보허위·부당청구, 2	건보허위·부당청구, 리베이트 처분,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분 유무 유□ 무□								

1. 인프라(시설·인력) 구축 계획

1) 시설 구축 계획

(1)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(관찰병상 2병상 이상) 설치

응급의료센터	병상 수	병실 형태		설치 방법	
중남의표센터	767	1인실	다인실	결시 정점	
41/21	설치 예정 병상 수		비권장	<i>증축/개보수</i>	

[※] 추후 정신응급 관찰병상 사용 수가 산정을 대비하여 1인실 마련 필요

(2) 사업추진 일정

7. H			2022	2 년		
구 분	1	2	3	4	5	6
설계	V					
리모델링 계약	V					
리모델링 기간	V	V				
리모델링 완료		V				

[※] 병상 설치 완료 일정 등 구체적 사업 일정 명시

(3) 응급의료센터 도면

현재(관찰병상 설치 전)	관찰병상 설치 후

(4) 기타

- 사업수행인력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 등 별도의 시설 구축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

2) 인력 운영계획

(1)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현황

- 사업수행 조직(응급의학과 의사 포함, 협진체계 고려)
 - : 응급의학과의 경우 전담인력은 아니더라도 사업 개입(협조) 가능 최대 인원 작성
- 전담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기관은 미정으로 하되, 인원수를 조직도에 기재

<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조직도>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장 (성명, 응급의학과/정신건강의학과)

응급의학과	정신건강의학과	간호사	기타인력
* 성명(전문의/전공의)	* 성명(전문의/전공의)	* 성명	* 성명(보안/행정)

구분		투입 인력 수	업무내용	전담	비고
센터	장				
응급의학과	전문의			$\sqrt{}$	
등급의역과	전공의				
정신건강	전문의			$\sqrt{}$	신규채용 예정
의학과	전공의				
간호사				$\sqrt{}$	신규채용 예정
보안인력				$\sqrt{}$	신규채용 예정
행정인력					
				-	

(2)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인력 운영 및 채용 계획 등

정신건강의학과 의사(전문의, 전공의) 운영								
·	또는 <u>전공의</u> 당직 근무		나 <u>24시간</u> L) 당직 근무	③야간 전담 전문의 채용				
해당여부 (O, X)	참여자수	해당여부 (O, X)	참여자수	해당여부 (O, X)	참여자수			
(예사) 0	3	0	1	0	2			
④기타	인력 채용 계획 등 의사 인력 운영 계획							

※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각각 모두 표기, 기타란의 내용은 작성방식에 제한은 없으며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·명료한 서술 요망

- (3)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간호사 등 인력 운영 계획
 - 간호사 등 필수인력 운영(채용 계획, 기존 인력 활용 방안 등 포함) 계획 및 전담인력 운용 계획
- (4) 야간·휴일 및 학회 등 공백 발생 시 인력 활용 계획
 - 전담인력 대직자 운용 계획 등

2. 사업수행계획

1) 사업의 필요성

- ※ 응모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
- ※ '20년, '21년 정신응급추정군* 수(NEDIS) 제시(필수입력)

* 정신응급추정군

진단명이 다음과 같은 환자 중 내원수단 경찰차, 응급실 진료결과 입원, 전원유입군, 자의퇴원

- 정신과 진단명 F10-19, F20-29, F30-39 주 진단군
- 신체 손상 진단명 S00-T98 중 의도성 진단군
- 고의적 자해 진단명 X60-X84 진단군
- 의도적 자해 사건의 후유증 진단명 Y84 진단군

2) 사업 목적

※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

3) 성과지표

사업목표	전략·활동	성고	측정방법		
가입되고	신약'월정	전략·활동 기준 기준		ল প প ম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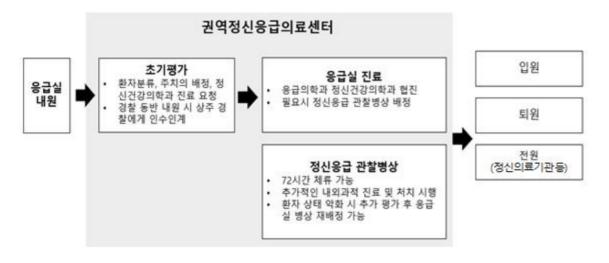
- 목표: 사업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기술하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함 (예. OO지역 청소년 흡연률을 3% 감소시킨다)
- 전략과 활동: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자원투입, 활동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(예, 금연학교 정책을 개발한다. 금연관련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)
- 기준: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, 전년도 실적 등의 근거를 제시(예. 전국 청소년 흡연율 13.3%. 전년도 OO지역 청소년흡연률 15%)
- 목표치: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(예, 청소년 흡연율 12%)
- 측정방법: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(예. 설문조사)

4)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

※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

(1)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(프로세스)

-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에 따른 대응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거나 그림으로 작성 (예시)



(2) 대응체계에 따른 각 부서별 역할 분장

-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, 간호사 등 부서별 역할 기재

부서	역할
응급의학과	
정신건강의학과	
간호사	
보안인력	
행정인력	
기타	

(3) 권역 내 협력 정신의료기관 등 현황 및 이송 방안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

번호	협력기관	협력내용	거리	운영시간	이송계획
1	XX정신의료기관	24시간 응급입원 및 전원 협력병원	10km	<i>24시간</i>	권역정신응급의료 센터 구급차 이용
2	00정신의료기관	XX시 발생 환자 전담 응급입원 협력병원	5km	8AM~18PM	
3					
4					

⁻ 이송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포함

5) 사업예산

(1) 재원조달<u>(지방비 50%)</u>

H	7-11-7	기타	الم خ	
구분	국고보조금	지방비	자체예산	총액
금액(천원)				
백분율(%)				

- 지방비 확보 계획 명시

(2) 세부예산(해당항목만 기재)

구분	비 목 명	산출내역	금액(천원)	비율(%)
	인건비		426,000(최대)	
	운영비			
	- 일반수용비			
	- 공공요금 및 제세			
자체	- 임차료			
수행	- 복리후생비			
경비	- 기타운영비			
	여비			
	직무수행경비			
	유형자산(리모델링 및 자산 취득)		35,000(고정)	6.1
	전체 총액			100

- 인건비 배정 가능 최대금액(426백만원)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필요, 기존인력 활용 시 기존 수당 등을 고려하여, 실지급 가능 금액 적용
- < 기관당 예산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 주요 내용 > ※ 지방비 확보 필요
- ① (인건비 426백만원) 전문의(2명) 288백만원, 간호사(2명) 80백만원, 보안인력(2명) 58백만원
 - *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, 그에 따라 인건비 사용에 대한 세부 조정 내용을 운영계획서 세부예산 항목에 작성하도록 함
- ② (운영비 등 112백만원) 필수병상 사용료 등 운영비 112백만원
- ③ 단기관찰구역(2병상) 리모델링 35백만원

6) 사업추진 일정

ט ווי לא ווי	월 별							שן די					
사 업 내 용		2	3	4	5	6	7	8	9	10	11	12	비고

7)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

- ※ 사업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
- ※ 보조금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 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, 사업 결과를 확산 (예, 홍보)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

3.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계획 (해당 시도에서 작성)

- 1)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현황 및 2022년 운영 계획 등
 - (1) 전년도「정신응급 대응 협의체」운영 현황

< 2021년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실적(시도) >

시도	시군구	운영횟수	주요안건(요약)	비고

< 2021년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실적(시군구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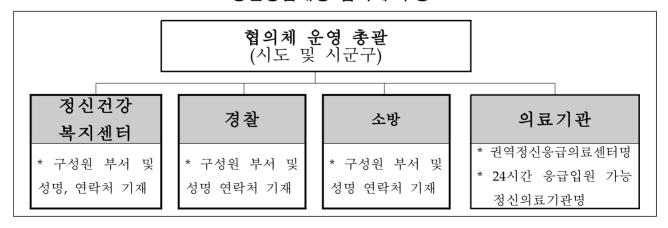
지자체명	구분	운영일시	참석자수	주요안건(요약)	비고
	1회				
	2회				
	3회				
	4회				

(2) 2022년도「정신응급 대응 협의체」 구성

0

_

<정신응급대응 협의체 구성>



※ 각 지자체 인력상황 및 조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. <u>단</u>, 정신건강복지센터, 경찰, 소방 인력은 필수

- (3) 2022년도「정신응급 대응 협의체」운영 계획 ○
 - _
- 2) 24시간(야간·휴일)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명단 및 의료기관 간 정신질환자 진료 의뢰·이송 체계 지원 * 필수 기재
 - (1) 24시간(야간·휴일)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명단 및 외부 자원

번호	협력기관	협력내용	연속성(√)
1	XX정신의료기관	24시간 응급입원 전원 체계 구축	
2	<i>00정신의료기관</i>	24시간 응급입원 전원 체계 구축	
3	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	
4	경찰 · 소방	정신응급환자 보호 및 이송 지원 등	

- ※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(예, 유관기관, 단체, 지역사회, 협회 등)하고 협력내용(후원, 자문 등),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 (예: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, 후원 참여 등)
- (2) 의료기관 간 정신질환자 진료 의뢰·이송 체계 지원 내용
 - 0
 - _
- 3. 특이사항(필요시 작성)
 - _